

2. 金融規制緩和 最終案 確定

- (배경) 정부는 본격적인 금융시장의 개방에 앞서 金融自律化 및 金融產業改編을 추진하여 오던 중 金融規制緩和 未盡部分에 대한 最終案 을 확정함
- (내용) 金融產業 進入 制限 유지, 外國換業무 인가와 은행의 해외점포 신설절차 완화 등 금융기관 설립 및 영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평가) 金融自律化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로 평가할 수 있으나 金融專業企業家 제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

금융규제완화 미진
부분에 대한 최종
안이 확정됨

- (배경) 정부는 본격적인 금융시장의 開放과 OECD 加入에 앞서 국내 금융산업의 競爭力を 強化하기 위해 金融自律化 및 金融產業改編을 추진해 옴
 - 최근 來韓하였던 OECD의 경제개발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韓國의 金融市場은 정부의 강한 規制로 落後되어 있으므로 政府介入을縮小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작년부터 재정경제원에서 추진해온 金融分野 規制緩和 작업중 26개 金融規制緩和 未盡部分에 대한 最終案이 3월 들어 행정쇄신위원회에 확정됨

예금자 보호제도가
완비된 후 은행에
대한 진입 제한 철폐

- (내용)
 - (進入規制) 產業資本에 의한 金融產業(은행)의 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 산업에 대한 進入 制限을 現行(認可制)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함
 - 단 預金者 保護制度가 완비되어 금융산업의 퇴출이 가능한 시점에서 은행에 대한 진입 제한을 철폐키로 함
 - (銀行) 金融專業企業가 지배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銀行長推薦委員會 제도 적용이 배제됨
 - 지방은행 및 합작은행의 경우 5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지배하는 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장추천

**금융기관의 통화채
인수의무가 폐지되
고 경쟁입찰 방식
이 도입될 예정**

위원회 제도가 적용됨

- 사증은행은 현행대로 추천위원회 제도가 적용됨
- (銀行)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계획에 따라 97년까지 금융기관의 通貨債引受義務가 폐지되고 競爭入札 방식이 도입됨
- (外國換) 올해부터 금융기관의 外國換業務範圍를 金融機關別(은행 종합금융회사 등)로 외국환관리규정에 일괄 규정하고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절차는 폐지됨
- (카드 및 리스) 올해중 現金서비스 限度規制를 철폐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카드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되 통화관리상 필요한 경우 회사별로 한도를 규제하기로 함
- (保險) 5억원으로 되어있는 사망보험가입금액 한도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철폐됨

**금융자율화의 진전
으로 평가할 수 있
으나 제도적 보완
더 필요**

○ (평가 및 전망) 金融自律化的進一步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進入規制, 金融專業企業家¹⁾제도 등에 있어 추가적인 補完策이 필요함

- 외국환업무 인가와 은행의 해외점포 신설절차 완화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규제의 체계 자체를 준칙주의 및 '原則自由,例外規制'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
 - 즉 법규에 명시된 일정요건만 갖추면 금융시장에 진입이 허용되고 또 금융기관은 법규가 금하지 않는 금융업무는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어야 할 것
- 제도상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 출현할 수 없게 되어있는 금융전업기업가가 실제로 등장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자격요건과 승인절차를 완화해야 할 것

1) 金融專業企業家는 금융기업 또는 금융전업기업군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실물산업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가를 지칭하며 產業資本과 金融資本의 分離를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 고수

- 이번 규제완화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재경원이 產業資本과 金融資本의 分離라는 原則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 또한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의 존속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은행경영을 지배주주, 특히 산업자본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평가됨
- 금융기관의 通貨債 引受義務가 폐지되고 競爭入札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金利의 市場機能이 회복되고 間接規制 通貨管理方式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김 성 수)

<표> 금융규제완화계획

제목		개선방안
진입 규제	금융산업 진입규제	예금자보호제도 완비후 금융기관 퇴출가능시 금융기관 신설 허용 · 인가제 유지
	금융전업가제도	자격요건과 승인절차를 협행유지
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전업가가 지배하는 은행은 배제 - 지방은행과 합자은행의 경우 5대계열기업군이 지배하는 경우에만 적용 - 시중은행은 협행유지
	통화 채인수의무	97년까지 폐지
	산업은행 운용자금 취급 제한	신종첨단산업에 대한 시설자금의 범위를 확대운용
외국 환	외국환업무인가	일회신청으로 은행업영위인가와 외국환업무인가 동시 처리
	일반은행 해외 점포 신설인가	재경원장관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나뉘진 인가권을 일원화
	수출환어음부도때 연체이자징수	신용장방식의 일람출금환어음과 기한부환어음의 부도때 부도통지후 3일안에 수출업자가 어음금액을 대납하는 경우 정상환가요율을 적용
	연지급수입기간	내년중 중소기업에 대해 용도와 지역에 관계없이 180일로 확대하고 대기업은 96-99년중 단계적으로 확대
	수출선수금영수한도	업체별 한도를 98년까지 수출액의 30%로 확대
카드 및 리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제한	한도규제를 철폐하고 카드회사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통화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별 한도규제도입
	특정건물의 리스범위제한	토지 또는 건물에 부속된 특정건물의 리스제한을 철폐
	세일엔드 리스백 취급금지	리스이용자가 자체제작한 국산품기계에 한해 허용
보험	보험신상품개발규제	꼭 신고상품으로 계속 규제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 재경원에서 제시
	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사망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철폐
	보험예정 이율	당초 기준율의 상하 1%포인트 범위안에서 자율화하려 했으나 자율화폭을 추후 결정